

의정정보

7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2018-7호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대구광역시 형광시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바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등 5건

■ 타시 · 도 의회 주요동향

대구시의회, '안전한장 탐방' 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현장 행진다 ! 등 5건

■ 최근 제·개정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6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대구광역시 북서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법의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 ▶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8)
- ▶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11)
-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12)
- ▶ 광주광역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 (19)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23)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5)
- ▶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 (28)
- ▶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30)
- ▶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36)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대구시의회, '민생현장 탐방' 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현장 행간다 ! (41)
- ▶ 제3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아르고 현장 방문 (43)
-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대법원 승소 (44)
- ▶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첫 번째 전체의원 수시연찬회 개최 (46)
- ▶ 제10대 경기도의회, 공약관리TF팀 신설 (47)
- ▶ 제11대 충북도의회 원구성 후 첫 건의문 채택 (48)





최근 제 · 개정 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 (5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53)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4)
-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 (55)
- ▶ 관광진흥법 (57)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58)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질의 (60)
- ▶ 대전광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질의 (63)
-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 사무의 읍 · 면 위임규칙」 제2조 등 관련 질의 (68)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2.] [대구광역시조례 제5117호, 2018. 7. 2., 제정]

□ 주요목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협업하는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눈다.

1.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협의회 의장,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2.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가. 일반시민

나. 경제분야 전문가

다. 언론계·학계 전문가

라. 그 밖에 공익활동 전문가

③ 민관협의회는 공공과 민간부문 공동의장으로 구성·운영하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 수행 기간 동안으로 하며,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고 그 직책 또는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는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단체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책 또는 권한을 잃을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며 그 직책 또는 권한의 승계자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 위원직을 이어받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직 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이라 한다)가 담당하며, 실무협의회의 운영은 투명협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문분과) 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민간부패의 실태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과 지원을 위해 필요시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2.] [대구광역시조례 제5118호, 2018. 7. 2., 제정]

□ 주요목적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민의 시정요구 또는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신고자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의 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면 그 처리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한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결과를 모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임(選任)하고, 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위촉과 해촉) ①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 구청장 및 군수가 추천하는 자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나 생활공감모니터단원, 분야별 전문가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② 단원 중 제6조제2항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권리와 의무) 단원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단원의 수당 등) ① 시장은 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시단 회의를 소집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11.] [부산광역시조례 제5791호, 2018. 7. 11., 제정]

□ 주요목적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4.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시행 2018. 7. 11.] [부산광역시조례 제5789호, 2018. 7. 11., 일부개정]

□ 주요목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8호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 36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제4조(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방향 및 시행방법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지원기준
3. 빈집의 철거, 정비 및 관리
4. 빈집정비사업의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빈집의 철거절차)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을 따른다.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입이 명백한 자구를 수정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하는 경우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 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 제9조(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준공 인가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구·군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법 제22조제3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3.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 제13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자구의 수정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 제14조(건축심의) 영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 계획에 관한 사항

제15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을 말한다.

제1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 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공유지의 조서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2.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③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의 공급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

에게 분양될 경우에는 규모별 100분의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④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20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사람

제21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구관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소득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2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제23조(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해당 구·군의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5. 광주광역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7.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096호, 2018. 7. 15., 제정]

□ 주요목적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광주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2. “사용권”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브랜드 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략산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

-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연구 및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
2. 광주산학연합의회 산업별 협의회장
3. 그밖에 관련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 제8조, 제11조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중지,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공동브랜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자인 및 표시) 공동브랜드 디자인 및 표시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다.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정지 및 취소)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시정·보완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지 않은 다른 제품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③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 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매년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품의 판로 확보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18. 7. 12.]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149호, 2018. 7. 12., 제정]

□ 주요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한다.
- ③ 장려금의 지원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종료 전까지 장려금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신고) 수급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 7.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252호, 2018. 7. 4., 제정]

□ 주요목적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 ·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 ·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서대문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3.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18. 7. 6.]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381호, 2018. 7. 6., 제정]

□ 주요목적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이하 “단기농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귀농어·귀촌 희망자의 영농교육 및 고창농촌체험을 위한 단기거주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단기농촌체험시설에서 “단기”란 최대 1주일을 의미한다.

제3조(위치) 단기농촌체험시설의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에 둔다.

제4조(사용허가) 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농촌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장기 기숙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료)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행사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사람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반환 한다.

1. 단기농촌체험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귀중품 보관) ① 관리자는 단기농촌체험시설 이용기간중 이용자의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귀중품(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보관하고, 보관자의 청구가 있을 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귀중품 중 분실·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③ 귀중품을 사용자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분실 또는 망실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18. 7. 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603호, 2018. 7. 3., 제정]

□ 주요목적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 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 · 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 · 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 구명로프(투척로프) · 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 · 관리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 · 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운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무복 등)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관계 기관·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하여 모집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반(TF팀 등)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시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알려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상북도

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5조(예산확보) ①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

2.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② 시장은 원활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난구조 단체 등에 활동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홍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포항시 홈페이지

3. 휴대전화

4. 인터넷, SNS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보·경보시설 등

5.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8. 7. 9.]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614호, 2018. 7. 9., 전부개정]

□ 주요목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

제2조(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등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 나.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 다.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 라.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공중화장실등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 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4.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

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변기·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7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그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동화장실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환기·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

제9조(간이화장실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치기준과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0조(유료화장실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제12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민생현장 탐방’ 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현장 행간다!

- 제8대 첫 행보로 매곡정수장 방문하여 민생현장 직접 점검 -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7월 13일 제8대 대구시의회 첫 행보로 ‘민생현장 탐방’ 투어를 위해 매곡정수장을 방문하여 수돗물 생산현장을 점검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생활정치를 실현한다’는 제8대 시의회 의정활동의 큰 방향을 정하고, 이번 회기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현장 구석진 곳까지 찾아 나서며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과 동고동락하겠다는 각오로 ‘민생현장 탐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탐방에는 배지숙 의장과 대구시의회 30명 전체 의원들이 참여했다. 매곡정수장을 찾은 시의원들은 상수도본부장과 매곡정수사업소장으로부터 낙동강 원수 취수과정과 정수장 내에서 수돗물 고도정수 처리 전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현장을 돌아보며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수장 내에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이 효과를 높이려면, 원수의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배출 차단과 낙동강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상수도본부와 대구시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수돗물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데도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 발생 이후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안정화시키려는 대구시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 의견과 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대구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배지숙 의장은 “먹는 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다. 바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 묻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먹는 물 문제에 결단력 있는 추진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대구시민들이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아람고 현장 방문

- 아람고 2017 교육과정운영계획 사태 관련 원인 및 경과, 재발방지대책 확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7월 3일 제3대 의회 개원 후 첫 위원회 활동으로 아람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했다.

최근 아람고는 '2017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의 편향된 학생 생활태도 분석으로 논란을 낳았다. 이에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문건 작성 경위와 원인, 사태 수습 경과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과정운영계획이 여러 절차와 단계를 거쳐 수립되었음에도 지역 별로 학생을 구분해 편향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보고서에 그대로 담긴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직원 대상 민주시민 의식과 학생인권 관련 연수를 강화 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상병헌 교육위원장은 “아람고등학교 개교 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하여 이번 사태를 수습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사태 수습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상병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윤형권 위원, 박용희 위원, 손현옥 위원, 임채성 위원 등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대법원 승소

- 의회의 도민중심 입법활동 대법원에서도 정당성 인정받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활동 및 입법 전문성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3월 제주도정이 제소한 제10대 의회 김태석의원(현 제11대 의회 의장)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7월 12일 선고되었다.

판결내용은 첫 번째로 원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인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두 번째는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제3호 (나)목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공·조리한 식품(이하 '가공·조리 식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및 설치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도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조리 식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고, 조례안 규정들을 모두 살펴봐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조례안의 문언과 체계, 조례 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 제2조 제3호 (나)목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여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세 번째는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6조가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례안 제5조, 제6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정이 제기한 조례의 문제점 모두가 대법원에서 법률위반이 없는 사항임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주도정의 행정편의 조례해석과 관계공무원들의 주민 요구를 외면한 처신이 불필요한 행정력과 도민혈세를 낭비하면서 모처럼 생성된 도민문화시장의 열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제주를 새롭게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각광받으며 지역의 창의적인 문화트렌드를 창출하던 벨롱장 등의 도민문화시장을 행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조례 대표발의자는 도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의정혁신과 도민행복을 강조하고 있는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김태석의원이다. 김태석의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전해 듣고 '행정이란 우선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체 1년 6개월의 시간을 소모해 버린 도정에 아쉬움이 크다'며, 제주도정에 대한 유감과 도민피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였다.

도민주권을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입장에서 합리적이며 법정신에 맞는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조례안재의결무효소송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전문성을 카지노 관련 조례에 이어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보였다.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첫 번째 전체의원 수시연찬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는 제238회 임시회 기간중인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연구소 전영복 연수처장과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초빙하여 전체의원 수시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지방의회연구소 전영복 연수처장은 「지방의정 활동의 실천적 전략과 방향」이란 주제로 회의 운영과 조례 입안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하여,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는 「결산·예산안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고 심사할 것인가?」란 주제로 결산 심사의 접근 전략 및 주요 체크 포인트와 예산안의 편성 및 심사체계 등에 대하여 열띤 강의를 펼쳤다.

이날 연찬회는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제8대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제10대 경기도의회, 공약관리TF팀 신설

-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의회’ 구현 착수 -

10일, 경기도의회는 공약관리TF팀을 신설하고 도의원들의 공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안산1)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의회’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일반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약관리TF팀을 출범했다.

공약관리TF팀은 도의원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의원별 지역공약 수집 및 시책 반영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송한준 의장은 “1,330만 경기도민께서 선택하신 도의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약관리TF팀을 중심으로 142명의 도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을 빈틈없이 분석하고,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도민과의 신성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충북도의회 원구성 후 첫 건의문 채택

-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건의문 -

원구성을 마친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가 첫 번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는 6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가 제안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참혹한 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으로 지난 6월 소방청으로부터 1차 후보지로 충북이 선정된 바 있다.

이수완 위원장은 건의문에서 “충북혁신도시는 지역접근성 측면에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3개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전국에서 2시간대 접근 가능한 국토교통의 중심지이나, 아직까지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혁신도시 시즌2’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소방전문 종합병원 건립이 절실한 상황”임을 역설했다.

“통합청주시 관문인 청주IC 인근에 위치한 석소동은 경부고속도로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 등 교통접근성이 월등 함에 따라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동 지역에 유치될 경우



비수도권 부상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이용률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32명 의원 모두는 소방공무원들의 의료복지 향상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북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낼 계획이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6호, 2018. 7.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등을 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를 연간지원한도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선(제3조제1항 단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여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개선(제29조제1항제3호나목)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되기 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되기 전에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확대(제42조제4항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까지도 제외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이 비용의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제95조의2)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하여 적용하던 것을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을 적용하도록 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8호, 2018. 7.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당한 운임 등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뱅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추가하고,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비율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임 등의 신고대상에 뱅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추가(제4조제3호 신설)
화물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뱅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를 추가함.

나.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의무 위반자 처분 기준 조정(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 제20호 및 제21호 등)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 또는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60일의 사업정지나 허가취소하던 것을 의무 위반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다.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8호 및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의 제13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 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9037호, 2018. 7.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 및 승강식 피난기를 추가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하도록 하였던 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중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을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설을”을 “시설 및 설비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설을”을 “시설 및 설비를”로 한다.

- 1) 지상 1층
-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2조제5호 단서 중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 가. 지상 1층
-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의2 중 “법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9032호, 2018. 7.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까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4조의 제목 “(인정기관의 지원)”을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4. 최근 2년 내에 지정·재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제7조제1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을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재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이의 신청)”을 “(이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제3항에 따라”를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결과”를 “지정·재지정 및 지정·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재지정하거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재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9명”을 “15명”으로 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 2018. 7. 13.] [법률 제15636호, 2018. 6.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제4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나.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5조, 제8조, 제24조, 제26조 등).

다.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31조).

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제52조).

마.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58조제1항제23호 신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4호, 2018. 1.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가출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질병의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질병의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1조제1항 중 “의료지원”을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에 그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의견18-0128, 2018. 6. 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에 그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이하 “달서구조례”라 함)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대학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이하 “달서구조례안”이라 함)에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달서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달서구조례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시설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수탁기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계약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대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달서구조례안에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그 위탁사무를 특정하여 규정한다면 그 법령이나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민이 해당 사무의 법적 책임자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 달서구의 사회복지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것으로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조례에 “○○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는 방식이 주민들 입장에서 해당 시설의 법적 운영책임자를 파악하기 쉬울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 시설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이 법령에 있더라도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달서구조례안에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노인대학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는 있을 것이나,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의견18-0119, 2018. 6. 26., 대전광역시]

【질의요지】

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대전시장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제2조제11호에 근거하여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더라도 「대전마케팅공사조례」 제2조제11호를 근거로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 함)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하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이라 함)에 규정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에서는 “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문언상 “시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등 대전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대전시교류센터조례”라 함)에 따라 설립된 교류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장이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시의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그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수익계약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는 점(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특정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같은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 32 판결례).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려면 특정기관에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에 관한 사무는 ○○○에 위탁한다”등의 형식)을 두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 출자·출연기관이 다수 존재할 경우 등을 고려하면, 특정기관에 교류센터의 운영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전시교류센터조례를 근거로 대전시장이 교류센터의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에 그 수탁기관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교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류센터를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내 대학 및 국제교류를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류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제2조제11호에서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대전시장은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조례」 제2조제11호에 근거하여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교류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해서는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내 대학 및 국제교류를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조례 제8조제1항만 남게 되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그 자본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 되는 기관이므로, 지방공사인 대전마케팅공사도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시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1항은 교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이지, 대전마케팅공사라는 특정 기관에 교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제2조제11호에서 대전마케팅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무를 대전마케팅 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일 뿐(법제처 2014. 3. 17. 의견제시 14-0051 참조),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을 근거로 대전시장이 대전마케팅공사에 교류센터의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더라도 「대전마케팅공사조례」 제2조제11호를 근거로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수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현행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제2조 등 관련)

[의견18-0116, 2018. 6. 19., 경상남도 거창군]

【질의요지】

거창군수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현행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의견】

거창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는 위임 받은 권한에 따른 사무가 아니라 거창군수의 본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할 것이므로, 현행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분류를, 같은 영 제2장에서는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등과 허가 신고의 절차, 기준 등을, 같은 영 제3장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영 제3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남도조례”라 함) 제12조에서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이하 “거창군규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항을 같은 규칙 별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거창군수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현행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수를 허가 등의 주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광고물등의 규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서나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0조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 역시 시장등에게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기존 허가나 신고의 변경 및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서도 군수를 허가 등의 주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경상남도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는 “지정계시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그 밖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정계시대의 설치 의무를 군수에게 부여하고, 지정계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중 경상남도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옥외광고물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경상남도조례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거창군수는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설치·관리자로서 거창군의 현수막 지정계시대 설치·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설치·관리 사무가 거창군수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창군규칙 제1조에서는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에서는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와 제4조에서도 군수가 “위임”받은 후 “재위임”한 사무와 관련된 감독, 권한의 책임과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군규칙은 거창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이지, 위임 받은 권한이 아니라 본래부터 거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자치법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창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는 위임 받은 권한에 따른 것이 아닌 거창군수의 본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할 것이므로 현행 거창군 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8년 7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